

2022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편성 · 운영 지침

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교양, 직업기초능력, 전공 교과목 및 대학종합발전계획(NVP2030)의 정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근거한 2022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입니다. [대학종합발전계획 관리코드 : 2-1-A-마]

1 교육과정 편성

직업기초 및 교양 교과			전공 교과				
기초학습	직업기초	교양일반	융합전공	취·창업	창의	전공기초	전공직무

2 교육과정 편성원칙

- ①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중심 직무 단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
- ② 직업기초 및 교양 교과(기초학습, 직업기초, 교양일반)은 대학과 학과에서 개설 운영
- ③ 원격강좌 운영 교과목(직업기초)은 교무처(직업교양교육센터)에서 일괄 개설 운영
- ④ 한 학기당 15학점이상 최대 24학점 이내로 수강 가능하도록 편성
- ⑤ 전공과목은 한 학기 단위로 이수토록 2학점 이상으로 편성
- ⑥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편성기준은 직업기초 및 교양과목 10~30%, 전공과목 70~90% 편성하되, 학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업기초 및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비율을 조정
- ⑦ 전공교과목은 이론시수 30~50%, 실습시수 50~70% 편성하되, 학과 교육과정 운영 상 개설 비율을 달리 할 수 있으며,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율을 조정
- ⑧ 학점 및 시수는 1학점 당 1시수로 편성하되,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1학점 당 1~2시수로 편성 가능

⑨ 학과별 교육과정 필수 편성 교과목

- 외국어 교과목 : 학과별 교과목은 자율적 편성
- 직업기초능력 등 개설 교과목

구	분	교과목		비고
		영역	학점 및 시수	
직업기초능력		인성 및 봉사	1학점 1시수	1학년 1, 2학기 필수 2학년, 3학년 선택
		2개영역 이상	4학점 이상 (1학점 1시수, 2학점 2시수)	학과 자율 편성
기초학습*		국어, 영어, 수학 중 2과목 이상	1학점 1시수	1학년 1학기

* 기초학습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수준별 분반 운영

- 창의 및 창업교육 교과목

구	분	창의 교과목		창업교과목		비고
		교과목명	학점	교과목명	학점	
자연과학·공학계열		교과목명에 "캡스톤디자인", "창의"포함	3학점 이상	교과목명에 "창업"포함	2학점 이상	
인문사회계열		교과목명에 "캡스톤디자인", "창의", "TRIZ"포함	2학점 이상	교과목명에 "창업"포함	3학점 이상	

⑩ 교과목별 유연학기(집중이수제) 운영 : 학칙 제8조(수업일수)

- 전공교과목 중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수시간(15시간)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단축·운영
- 해당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(예습·복습, 과제물 작성 등)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 및 운영 가능

3 수업시간표 편성원칙

- ① 시간표 편성 : 주 7일(주말포함, 학생의 학습권 보장 범위 내 편성)
- ② 수요일 오후 : 대학에서 개설·운영하는 직업기초 및 교양교과 운영

4 수강 학생 수

- ① 수강인원 : 학칙 시행세칙 제13조(수강인원)
 - 시간당 수강인원의 단위 : 20명 내외
 - 학반 편성규정 제2조(학반 편성단위)
- ② 수강신청과목의 폐강 : 학칙 시행세칙 제14조(선택과목의 폐강)

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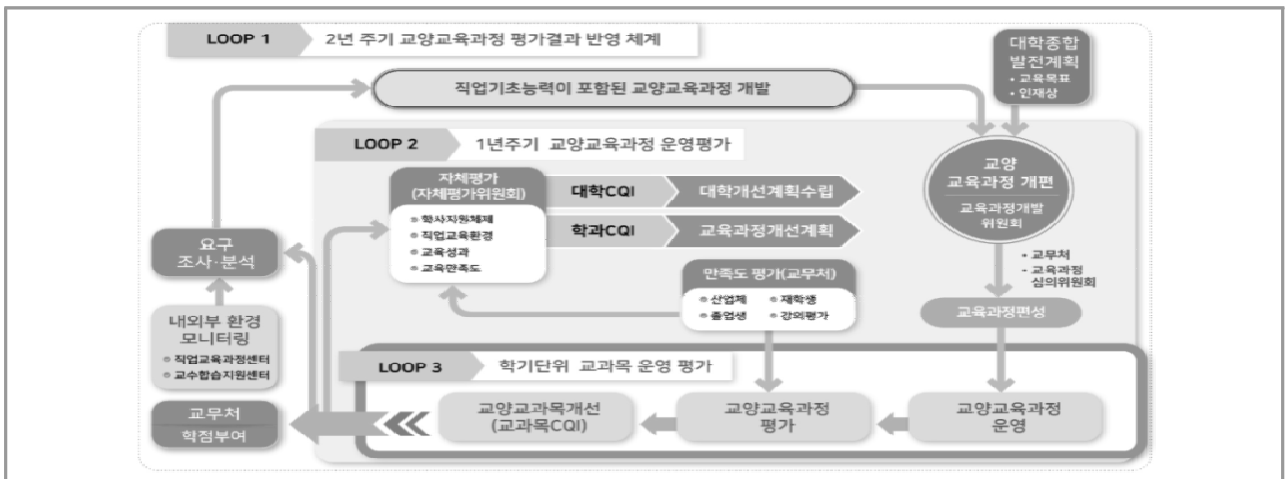
원격강좌 운영

- ① 원격강좌 관련 교과는 직업교양교육센터에서 개설
 - ※ 운영 및 관리는 원격교육지원센터
- ② 운영교과 : 기초학습, 직업기초, 교양일반
- ③ 담당교수 : 전임교원, 산학협력중점교수, 초빙부교수
- ④ 운영방법
 - 담당교수는 책임시수에 원격강좌 시수 포함
 - 출석, 시험, 과제 및 Q&A등 관리

6

교양 교과 운영

- ① 교양 교육과정은 기초학습, 직업기초, 교양일반으로 구분한다.
- ② 운영방법 및 절차
 - 교양교과 운영분석을 반영하여 재학생 수요조사를 진행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(직업교양교육센터)과 학과에서 개설·운영



7

교원별 시수운영

- ① 책임시수 : 교원은 반드시 해당 학과에서 책임시수 이상 배정
- ② 전임교원의 전공 관련 교과목이 소속학과 이외에서 개설 할 경우 전임교원 → 산학협력중점교수(초빙부교수) 순으로 배정. 끝.